

의안번호	2215515
의 퇴 인	박성훈 의원
회 답 일	2026. 3. 4.
추 계 번호	25A713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산업용 전기 이용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담금 수입은 2026년 398억원, 2030년 1,650억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6,897억원(연평균 1,37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현 시점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개소 수가 유지되고, 추계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산업용 전기 이용량이 과거 3년간(2023~2025년)의 평균 이용량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전기요금 채납에 따른 부담금 수입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향후 이러한 가정이 바뀔 경우 추계결과는 변동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안 제51조제2항제4호 (부담금)	-398	-1,602	-1,618	-1,629	-1,650	-6,897	-1,379

주 1)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2026년의 경우 법안의 심사기간,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에 대한 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1조제2항제4호 (부담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¹⁾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항)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재량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51조제2항제4호 (부담금)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2026년 2월 현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4개 지역(포항, 광양, 여수, 서산)이 지정되어 있으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정된 곳이 없음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요금 부과 시 함께 부과
- 본 추계에서는 향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의 지정 여부, 지역 등을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현행 수준의 지정 개소 수(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4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0개)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지역의 산업용 전기 이용량이 최근 3년(2023~2025년)의 평균 이용량과 동일할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기간 동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산출
- 또한, 전기요금 체납²⁾에 따른 부담금 수입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추계기간은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다만,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 첫 해인 2026년은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부담금 수입 감소분은 3개월분만 산출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는 산업위기지역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부담금 수입 감소분(2026.10월~2030년)을 산출함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포항, 광양, 여수, 서산)의 전기요금 체납 현황(2026년 2월 기준)
(단위: 백만원)

지역	포항	광양	여수	서산
체납금액(누계)	815	290	974	3,122

- 추계 방법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총 부담금 수입(결산액) 대비 현행 수준의 산업위기지역 부담금 수입의 평균 비중을 2026~2030년 부담금 예상수입에 적용하는 것으로 함
- (2023~2025년 산업위기지역 부담금 수입 비중) 2023~2025년 결산³⁾ 상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총 부담금 수입은 각각 3.0조원, 3.1조원, 2.7조원으로 나타났고, 총 부담금 수입 대비 산업위기지역의 부담금 수입 비중은 6.1% 수준

[표 2] 산업위기지역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금 수입(2023~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2025년 평균
총 부담금 수입 결산액(A)		30,083	30,757	27,646	—
산업위기지역	부담금 수입(B)	1,831	1,876	1,679	—
	비중(B/A)	6.1%	6.1%	6.1%	6.1%

주: 2025년의 전력기금 수입 결산은 예상 수치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2030년 부담금 예상 수입)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부담금 예상 수입⁴⁾은 2.6~2.7조원 수준임

[표 3]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예상 수입액(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부담금 예상 수입	26,161	26,328	26,582	26,760	27,113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3) 2025년의 경우 예상 결산 금액임

4) 2026년의 예상 수입액은 예산 상 수입금액이고, 2027~2030년은 중기계획 상 수입금액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연도별 목표수요(전력판매량)와 요금 단가 전망, 부담금 요율(2.7%)을 적용하여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발표한 수치임

- 추계 결과, 산업위기지역의 산업용 전기 이용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담금 수입은 추계기간 동안 총 6,897억원(연평균 1,37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현 시점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개소 수가 유지되고, 추계기간 동안 산업위기지역의 산업용 전기 이용량이 과거 3년간(2023~2025년)의 평균 이용량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부담금 수입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향후 이러한 가정이 바뀔 경우 추계결과는 변동될 수 있음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안 제51조제2항제4호(부담금)	-398	-1,602	-1,618	-1,629	-1,650	-6,897	-1,379

주 1) 단수 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2026년의 경우 법안의 심사기간, 시행 시점 등을 고려하여 3개월분에 대한 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산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 시점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개소 수가 유지되고, 추계기간 동안 산업위기지역의 산업용 전기 이용량이 과거 3년(2023~2025년)의 평균 이용량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부담금 수입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향후 이러한 가정이 바뀔 경우 추계결과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